

의안번호	제77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발의자	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6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3일
발의자 : 황영호,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1. 제정이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대중교통계획 의견 제시(안 제4조)
- 라.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안 제5조)
- 마.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안 제6조)
- 바. 대중교통 이용 권장(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충청북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4.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충청북도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 의견 제시)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 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제정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7., 2015. 12. 29., 2020. 4. 7., 2020. 6. 9., 2021. 1. 5.>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 시설” 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 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하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9.>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4. 7., 2021. 1. 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4. 7., 2020. 6. 9., 2022. 11. 15.>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2022. 11. 15., 2024. 1. 9., 2024. 1. 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2. 비용 발생 요인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을 위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에 소요되는 경비
-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에 소요되는 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소요 예산
- '25년 당초예산 요구액 기준으로 작성

- 추계 기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3,090억원(국비 634, 도비 1,013, 시군비 1,443)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